

영등포구의회
제167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

2012. 6. 11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 朴 鍾 成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31호로 2012년 5월 31일 김종태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구청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구민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, 전통시장 상인의 상품 하역주차 시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을 일부 면제하여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주차요금을 기존 100분의 20으로 적용 하던 것을 두 자녀와 세 자녀를 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할인율을 100분의 30과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(별표 1 비고 제16호).

나. 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구민과 전통시장 상인의 상품 하역주차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최초 30분까지 면제하는 규정 신설(별표 1 비고 제18호, 제19호, 제20호).

다. 상위법의 개정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

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구민과 「다둥이 행복카드」 소지자, 전통시장 상인의 상품 하역주차 시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을 일부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내용을 보면
 -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일률적으로 주차요금의 20%를 적용하여 할인하던 것을 두 자녀는 30%, 세 자녀는 50%로 할인율을 변경함 (별표 1 비고 제16호).
 - 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업무 방문차량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상품을 하역주차 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최초 30분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(별표 1 비고 제18호, 제19호, 제20호).
- 본 조례안은 「주차장법」 제9조와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을 기존 20%에서 30 ~ 50%까지 상향 조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율 장려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,

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일부를 면제하는 규정을 확대 신설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그 밖에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5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주차장법」

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타 자치구 조례 개정현황 : 서울시, 강북구 외 8개 자치구

관 련 법 령

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

- 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**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<개정 2010.7.15, 2011.9.29>
8. 「다둥이 행복카드」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,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 <개정 2010.7.15>

■ 주차장법

- 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**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(이하 이들을 합하여 "노상주차장관리자"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,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 <개정 2011.6.8>
-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.
- 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(이하 "주차요금등"이라 한다)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.
-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0.3.22]

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(이하 "노외주차장관리자"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

[전문개정 2010.3.22]

제15조(관리방법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②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 [전문개정 2010.3.22]